

소득산정 기준

▣ 소득산정관련 서류

- 1) 주민등록초본 1부(주민등록번호, 최근5년 주소변동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)
- 2) 가족관계증명서(미혼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기준,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 발급)
- 3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(가구원 모두의 확인서 필요)
 - 부, 모, 본인과 희망시 형제,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포함시킬수 있음
 - ※ <http://nhis.or.kr>(공인인증로그인) → 민원신청 → 개인민원 → 보험료납부확인서
- 4)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1부(본인의 확인서만 제출)
 - ※ <http://nhis.or.kr>(공인인증로그인) → 민원신청 → 개인민원 → 자격확인서발급

▣ 가구소득 산정방법(사례포함)

○ 미혼일 경우

- (원칙)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모두 "기본 3인(부·모·본인)"
 - * 형제·자매가 있을 경우, 포함 여부 선택(포함 시 가구원수+소득에 모두 추가)
 - * 형제·자매의 소득이 많을 경우 포함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음
- (확인)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통해 확인

- 사례별 예시

①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

→ 가구원 수 3인, 부·모 + 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

* 확인 필요 서류 : 부(또는 모)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부·모+본인의 건강보험료

② 부·모가 모두 없는 경우

→ 가구원 수 1인,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확인

* 확인 필요 서류 :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본인의 건강보험료

③ 한부모 가정인 경우(사별, 이혼 불문)

→ 가구원 수 2인,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+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 (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동거 여부 확인)

* 확인 필요 서류 : 주민등록등본, 부 또는 모 + 본인의 건강보험료

④ 형제·자매 등 부·모·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인 경우

(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, 부·모나 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로 인정)

→ 가구원 수 1인, 별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

* 확인 필요 서류 : 본인의 건강보험료(피부양자 확인용)

※ 위의 모든 경우에서, 형제·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

1) 가구원 수에 형제·자매의 수를 더하고,

2) 소득에 형제·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

* 단, 형제·자매가 부모·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합산 불요

○ 기혼일 경우

- (원칙)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, 아니면 별도의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
- (동거중인 경우) 가구원 수는 4인(부·모·본인·배우자)+자녀수로 하고, 소득은 “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·모+본인+배우자” 확인
- (독립한 경우) 가구원 수는 2인(본인·배우자)+자녀수로 하고, 소득은 “본인+배우자” 확인
- (확인)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통해 확인
- 사례별 예시

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

→ 가구원 수는 4인(부·모+본인+배우자) + 자녀수 합산, 부·모 + 본인 +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

* 확인 필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동거 여부 확인), 부·모+본인+배우자의 건강보험료

※ 위의 경우에서, 형제·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

1) 가구원 수에 형제·자매의 수를 더하고,

2) 소득에 형제·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

* 단, 형제·자매가 부모·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합산 불요

② 독립한 경우

→ 가구원 수는 2인(본인+배우자)+자녀수, 본인 +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확인

* 확인 필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동거 여부 확인), 본인 + 배우자의 건강보험료